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5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14. 3. 4.

판결 선고2014.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326.3㎡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6. 11.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2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6. 12. 28. 그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족한 유류분 상당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반환방법 및 범위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참조).

나아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상속재산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한다)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된 후,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된다.

한편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므로, 결국 원고의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10 지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 6. 11.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별수익 관련 주장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원주시 H 임야 4,463㎡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담보대출 관련 주장 피고는, 피고가 유증 이전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억 8,000만 원의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유증 이후에도 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점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망인이 아니라 피고인 이상, 위 채권최고 합계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진 다음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거나,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망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원고 스스로가 위 각 근저당권의 부담을 용인한 상태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관련 주장 (가)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200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건축된 병원 건물이 있다. 피고는

의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병원 건물을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대출받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사무장을 그만 둔 2001~2002년경에도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의 돈 약 5,200만 원을 주었다. ③ 원고가 망인이 명의신탁한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 결국 망인 등 조상들의 묘지를 위 임야에 설치하지 못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처지이다. ④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도움으로 마련해 준 원주시 I아파트 201동 707호를 상의도 없이 처분하여 망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하는 등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① 을 제2호증의 기재, 농협중앙회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2002. 8. 7. 99,140,959원을 대출받아 그 중 99,14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99,14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돈을 대출받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② 피고가 위 ①항과 같이 원고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3. 8.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813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11. 일부승소판결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을 유증받은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피고에게 원주시 H 임야 4,463m'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망인 등의 묘지가 있거나 묘지로 사용할 예정인 위 임야를 다른 자손들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조상들의 묘지가 있거나 묘지로 사용 예정인 토지를 처분하여 묘지를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④항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의칙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유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유증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구태회